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2항나호(대중 참여 기회)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입장의 접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제20.7조제2항나호는 당사국이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입장을 접수하기 위한 기준의 경로와 중복되는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입장의 접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국은 이러한 입장을 접수하기 위하여 제20.7조제2항나호에 합치되게 적절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그러한 입장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전달된다는 것과, 그러한 입장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제출되고 제20장(환경)의 특정 조항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전달된 입장을 접수한 경우, 자국의 응답을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직접 제공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수잔 C. 슈와브